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80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장철민 · 허 영 · 김영환
김한규 · 채현일 · 박 정
허성무 · 박용갑 · 조승래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재혁신센터의 설치)”를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재혁신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진흥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진흥원이 아닌 자는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제1호 중 “인재혁신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4조제9항을 위반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 <u>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u> <u><신 설></u> <u><신 설></u> ② <u>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 6. (생략) <u><신 설></u>	제14조(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의 설립) ① <u>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② <u>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 ③ <u>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④ <u>진흥원은</u>----- -----. 1. ~ 6. (현행과 같음) ⑤ <u>진흥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진흥원이 아닌 자는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

1. <u>인재혁신센터</u> 또는 해외인재 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생략)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1. <u>진흥원</u>----- ----- ----- 2.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14조제9항을 위반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6. (생략) ②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